

지원자격 확인서

자격요건 확인사항	네(맞음)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*) 각 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?		
* <결격사유>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	
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		
<input type="checkbox"/>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제1항 각 호*에 해당되지 않습니까?		
* <제1항 각 호>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		
<input type="checkbox"/>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실이 없습니까?		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 이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습니까?		
<input type="checkbox"/>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습니까?		
* 여성의 경우 "네" 표기		
<input type="checkbox"/> 2022년 09월 16일 이내 임용 가능합니까?		

지원자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며,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원자 : (서명)

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